분할공제금 지급 신청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				제결	출일 : 20	년 월	일
본인은 아래 분할공제금 주요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분할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.							
계약자 성명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	번호			
○ 신청내용							
지급방법	□ 전체 분할지급 □ 일부 분할지급 (* 아래 분할지급/일시금지급청구액 기재)						
분할지급 청구액	원 일시금지급 청구액						원
지급기간 (*변경불가)	□ 5년	□ 1	0년 🗆] 15년		20년	
지급주기 (*변경불가)	□ 매월(연 12회) □ 매분기(연 4회) □ 매반기(연 2회) □ 매년(연 1회)						
지급일	□ 매월 ()일 □ 매분기 ()째달 ()일 □ 매반기 ()째달 ()일 □ 매년 ()월 ()일						
○ 분할공제금 수령계좌 ※ 계약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							
거래은행 은행 예금주 * 계좌압류여부 (자필기재)							
계좌번호 압류중 / 정상 압류방지계좌 여부 □ 예 □ 아니오 * 수령계좌의 압류여부 필히 확인							
압류방지계좌 여부 □ <td< th=""></td<>							
분할공제금 주요내용							
* 분할공제금은 공제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,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							
□ 신청요건							
○ 만 60세 이상 이면서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 (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, 일반해약시에는 선택 불가)							
□ 지급방법							
○ 지급기간 : 5년, 10년, 15년, 20년 중 택일 (* 조건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십시오) ○ 지급주기 : 매월, 매분기, 매반기, 매년 중 택일 (* 조건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십시오)							
ㅇ 지급일 :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 (변경가능)							
ㅇ 지급계좌 :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 (변경가능)							
* 계약자의 귀책으로 지급기일에 정상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분할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							
□ 적용이율 :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동안 기준이율 을 연 단위 복리로 지급 □ 세제 : 일시금 지급시 적용되는 세제 적용 (이자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)							
□ 세세 · 필시금 시합시 역용되는 세세 역용 (에시포력세 또는 되역포력세) □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 (※ [별지 제32호 서식] 분할공제금 일괄지급청구서 제출 필요)							
나 만할아에라는 말할이다 (첫 [날이 에)24초 이국] 만할아에는 말할이다였다이 에둘 말표)							

(2018. 9. 13. 개정시행)

계약자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계약자의 청구시 계약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